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장 윤 정

2012. 7

경제현안분석 제73호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작 성 I 장운정 세수추계과 경제분석관보

지 원 I 장유진 세수추계과 행정실무원

「경제현안분석」은 국회가 관심 있게 다룰 재정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 객관성 있는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 02) 788-4744 | ret@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장윤정

2012.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간사

세제를 통한 소득분배의 형평성 실현은 오랫동안 의회의 관심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어온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소득 보전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해 설계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제도로서 기대를 모았으나, 시행 후 3년동안 수급자격 소득 금액과 최대지급금액이 낮아 수급대상자가 제한적이었고 지급액마저도 해마다 감소하여 개선의 여지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제도의 개편과 확대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행정부 및 입법부 모두에서 활성화 되었으며, 실제로 18대 국회에 제출된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조 수정 관련 세법 개정안은 13건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샀던 바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일단락 짓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안이 2011년 말 확정되었습니다. 이 안은 부양자녀수별 급여체계를 차등화하고 최고급여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히 살펴보면 이번 확대 시행제도는 이전의 학술, 정책적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온 개선점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수별 급여수준 및 수급자격 기준금액 차등화와 수급 기준액 상향조정은 반영하였으나, 급여수준의 현실화 여부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계획의 재정 소요액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계획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근로장려세제 구 제도시행의 분배 개선 효과를 제도 설계의 주요 파라미터가 되는 총급여 집단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확대시행정책의 효과를 분배상황에 대한 지표인 지니계수의 개선정도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확대시행방안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2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

요 약

1.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근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된 제도
 - 2011년까지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회보험을 수급하지 않는 가구가 수급 대상이었음
 - 소득기준(연 총소득 1,700만원)
 - 재산기준(1억원 이하)
 -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 부양자녀기준(만 18세 미만 1명이상 부양)
 - 연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가구에는 소득에 비례하여, 연 근로소득 1200만원 초과 가구에는 소득에 반비례하여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
 - 최대지급금액은 120만원이었음

- 2006년에 맞추어 설계된 지급기준이 2009년부터 3년간 유지된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점차 축소
 - 1700만원은 2006년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20%였으나 명목임금수준 등이 상승하여 201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4%에 불과한 금액
 - 2011년 지급금액은 총 4,020억원이며 지급대상가구수는 52만 5천가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7.8%, -8.0%를 기록

- 지급자격 상한 소득금액과, 최대지급금액을 부양자녀수별로 차등화하여 상향조정하는 안 2012년부터 시행 (2011.12.31. 조특법 §100조의 3 개정)
 - 가구원수별로 필요 생계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부양자녀가 2인인 가구는

연소득 2,100만원까지, 부양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연소득 2,500만원인 경우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가능하도록 확대

- 기존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던 무자녀 가구도 배우자가 있는 독립가구인 경우 연소득 1,300만원 이하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
- 최대지급금액도 자녀수별로 70만원(무자녀), 140만원(1인), 170만원(2인), 200만원(3인)으로 차등화 및 상향조정

2012년 EITC 확대 시행 계획

구분	2011 이전		2012년 제도 확대	
	소득기준	최대지급금액	소득기준	최대지급금액
무자녀 가구	-		1,300만원	70만원
1자녀 가구	1,700만원	120만원	1,700만원	140만원
2자녀 가구			2,100만원	170만원
3자녀이상가구			2,500만원	200만원
주택요건	5,000만원		6,000만원	
수급대상	근로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포함 근로자	

2. 2012년 확대지급계획 하 소요재정 추계

□ 근로자 가구에 확대지급계획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은 2,719억원으로 추계

- 2008~2010 3개년간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가구별 소득, 근로소득, 가구원수, 연령, 거주형태 조사정보로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 및 수급금액 산출
- 가계동향조사자료에서 산출한 수급가구수 및 가구당 평균 수급금액을 국세통계연보상의 2008~2010상 지급 실적과 총급여구간별로 비교하여 가계동향조사 표본상 수치를 전수자료와 비교 가능한 수치로 조정하는 계수 도출
- 2011년까지 적용된 지급기준 하에서 2012년 지급예상액은 3,445억원이며, 확대 시행 계획의 지급예상액은 6,165억원으로 추가 재정 소요액은 2,719억원 (근로자 가구 대상, 적용직종 확대 효과는 별도계산)

3. 확대지급안과 기존 안의 분배개선 효과 차이

- 기존(~2011) 지급안의 분배개선효과는 0.03%
 - 근로장려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은 가구소득의 분배상태와, 예상 지급금액을 합산한 가구소득의 분배상태를 지니계수를 통하여 비교
 - 근로장려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지니계수는 0.371인데, 2011년까지 시행된 산정기준에 의한 근로장려금을 가구소득에 합산한 지니계수는 0.3709로 0.04%(지니계수 0.0001)의 분배개선효과가 있음

- 확대지급안(2012~)의 분배개선효과는 0.07%
 -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금을 가구소득에 합산한 지니계수는 0.3706으로 0.07%(지니계수 0.0004)의 분배개선효과가 있음

- 지니계수 0.01%p 감소당 예산소요액이 구 제도 하에서는 861억원인데 비해 확대계획하에서는 389억원으로 나타나, 확대시행이 보다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됨
 - 단,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조사항목 및 표본추출 편의의 한계를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음

차 례

I. 서 론 / 1

II.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 3

- 1. 도입 목적 3
- 2. 신청자격 및 장려금 산정기준 3
- 3. 시행경과와 지급현황 5
- 4. 제도 확대 방향 5

III. 기존연구 및 문제제기 / 7

- 1. 기존 연구 7
 - 가. 최적 설계에 대한 학술적 연구 7
 - 나. 정책연구 8
- 2. 문제의 제기 10

IV. 2012년 확대계획의 재정소요액과 분배효과 / 13

- 1. 기존제도 하의 2012년 재정소요 추산 13
- 2. 신규 제도 하의 2012년 소요재정 추산 16
- 3. 2012년 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분배 개선효과 19
 - 가. 전체집단 19
 - 나. 집단별 분석 21

V. 결 론 / 25

부 록 / 27

참고문헌 / 33

표 차례

[표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
[표 2] 2011년 까지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4
[표 3]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5
[표 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방안	6
[표 5] 2012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계획 (2)	12
[표 6] 2011년 가계동향조사 월소득 10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	14
[표 7]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식별	15
[표 8] 2010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2012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수 ..	15
[표 9] 제도 유지시 소요재정 규모	16
[표 10] 확대된 지급계획 하에서의 대상가구(가계동향조사 샘플 내)	17
[표 11] 제도 유지시 소요재정 규모(대상 직업군 확대이전)	17
[표 12] 업종 확대로 인한 근로장려금 신규지급대상자의 소득분포(2010 기준) ..	18
[표 13] 확대된 지급계획 하에서의 재정소요액	19
[표 14]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의 분배 개선효과1 (전체집단)	20
[표 15]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의 분배 개선효과2 (전체집단)	20
[표 16] 수급자 집단별 지니계수 개선효과	21
[표 17] 부양자녀수별 근로장려금 확대지급의 불평등도(지니계수) 개선효과	22
[표 18] 부양자녀수별 근로장려금 확대지급의 불평등도(지니계수) 개선효과	23
[표 19] 부양자녀수별 근로장려금 확대지급의 불평등도(지니계수) 개선효과	23
[표 20] 총소득 규모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교	27
[표 21] 총소득 규모별 가구당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비교	28
[표 22] 지급실적자료상 무주택가구 비율(3년평균)	29
[표 23] 총소득 규모별 가구당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의 배수(지급실적/가계동향) ..	29
[표 24] 총소득 규모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분포의 배수(지급실적/가계동향) ..	31
[표 25] 총소득 규모별 가구당 지급예상금액의 배수(지급실적/가계동향)	32

그림 차례

[그림 1] 2012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계획 (1)	11
[그림 2]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수 총소득 구간별 비중의 비교	30

I. 서론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공급 유인을 고취하고 저소득 계층의 일시적 빈곤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의해 시행근거가 처음 마련되었고, 첫 지급은 2009년부터 이루어져, 2012년 현재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입법 초기부터 계획해 온 제도 확대 및 개선에 대한 로드맵에, 3년여간의 시행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안이 2011년 말 확정되었다. 이 안은 자녀수별 급여체계를 차등화하고 최고급여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상세히 살펴보면 이번 확대 시행제도는 이전의 학술, 정책적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온 개선점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여, 자녀수별 차등화와 수급 기준액 상향조정은 포함하였으나, 급여수준의 현실화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계획의 재정 소요액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계획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신규 집단과 기존 수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시행의 분배 개선 효과를 제도 설계의 주요 파라미터가 되는 부양자녀수별, 총급여 집단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확대시행정책의 효과가 주로 어떤 집단에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1. 도입 목적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¹⁾(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장려하고 노동공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그 소득의 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잠재적 빈곤 상태에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에서 취업하여 있을 때 보다 기초수급자로 남아있을 때 가처분소득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기초수급자로 회귀하기 쉽다. 이는 전체적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 환급 성격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공급 유인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의 본래 목적이다.

2. 신청자격 및 장려금 산정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요건, 주택보유요건, 재산요건, 부양자녀요건 등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급대상이 종합소득자로 확대시행될 예정인 2015년까지는 근로소득에 기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소득자 조건). 예를 들어 가구 총소득이 기준소득액 이하이나 근로소득이 없고 총소득이 모두 비 근로소득(ex.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본 보고서가 분석하고자 하는 2011년 말 세법개정으로 이 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의 2 : 법 제2조제11호(차상위계층) 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은 일부 완화되어,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인의 지급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게 되었다.

[표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상세요건
총소득	지난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자녀수별 기준액 미만 ²⁾
부양자녀	배우자가 있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가 1명이상
주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재산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근로장려금이 결정된다. 2011년 기준 제도에 의하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구간은 근로소득 1원 증가에 대해 15%를 추가 지급하는 구간으로서,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점증구간’이라고 한다. 800만원 초과 1,200만원 미만 구간은 120만원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평탄구간’이며, 1,200만원 초과 1,700만원 미만 구간은 ‘점감구간’으로서 이 구간내에서의 근로소득 증가는 빈곤 탈출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도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2012년부터는 구간 기준 소득액의 크기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표 2] 2011년 까지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구간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점증	0원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5%
평탄	800만원 ~ 1,200만원 미만	120 만원
점감	1,200만원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 × 24%

2) 2011년까지는 1자녀 이상 모든 가구에 1700만원이었으나, 2011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무자녀 1300만원, 1자녀 1700만원, 2자녀 2100만원, 3자녀 2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4 • II.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3. 시행경과와 지급현황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으로 시행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2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근로장려금 첫 지급은 2009년부터 이루어져, 2012년 현재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2006년 첫 입법 후 2009년 첫 지급에 앞서 부양가족요건, 주택 보유 요건 및 급여구조(점증률, 점감률, 최고구간급여)를 일부 조정하였다 이는 당초 확대계획 중 일부를 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에 실현한 것이다.

2009년에는 59만 700여가구에 4,537억원이 지급되었고 2010년에는 56만 6천여가구에 4,369억원이 지급되었으며 2010년 지급가구수와 총 지급액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총 4,020억원을 지급하였다.

[표 3]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총수급가구	지급근로장려금 총액	가구평균 근로장려금
2009	59만7천	4,573억	76.8만원
2010	56만6천	4,369억	77.2만원
2011	52만2천	4,020억	77.0만원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4. 제도 확대 방향

입법 초기에는 예산과 소득과약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소득과약이 상대적으로 쉬운 근로자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차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래 표를 보면 1,2단계는 근로자 적용단계로, 3단계는 사업자 확대단계로 그리고 4단계는 전면 시행단계로 부양자녀수의 제한을 없앨 예정이었다.

[표 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방안

구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30년까지)
적용대상	부양자녀 2인 이상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자녀 없는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

자료: 재정경제부 EITC 추진기획단, 「근로장려세제」, 재정경제부 정책백서, 2007.12

한편 2012년 세법개정시 근로장려금 수준을 자녀수 별로 차등인상하고, 지급 대상 소득 기준도 부양자녀수 별로 차등확대 할 것이 제안됨에 따라 종전의 확대방안 계획 일부를 조기 적용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적용대상을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까지 확대하고 종전 보유 주택 가액 상한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변경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일부 확대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 가구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향후 농어민 가구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III. 기존연구 및 문제제기

1. 기존 연구

가. 최적 설계에 대한 학술적 연구

저소득층을 위해 일을 통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ITC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이 제도를 60년대에 도입한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EITC의 도입 또는 확대가 저소득근로자의 노동참가율을 높인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Dikert, Houser, and Scholz (1995), Eissa and Liebman (1996), Keane and Moffitt (1998), Keane (1995), Meyer and Rosenbaum (1999), Eissa and Hoyes (1998) 등 참조) 그러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offman and Seidman (1990),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3), Dikert, Houser and Scholz (1995)는 EITC의 확대가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Keane and Moffitt(1998), Keane(1995) 등은 노동시간을 늘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Eissa and Liebman (1996)은 EITC가 노동 공급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Eissa and Hoyes (1998)는 분석대상이 가구의 주된 소득자 (primary earner)인지 혹은 이차적인 소득자 (secondary earner)인지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Eissa and Hoyes(2004)와 Bargain, Caliendo, Haan and Orsini(2006)에 따르면 EITC의 확대는 1차 소득자인 남편의 경제활동참가를 다소 증가시키지만, 2차 소득자인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EITC가 갖는 노동 공급 증대효과에 대한 관심이 2006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높아졌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최적화문제를 설정하여 점증률, 점감률 및 각 급여구간 설정의 최적점을 토대로 근로장려세제의 개선방향을 초기부터 제시하고자 한 연구((유한욱(2008))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안의 점감구간 소득상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고, 점증률이 점감률보다 낮게 설계되

어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상이한 임금분포를 갖는 집단(ex,가구규모) 별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노동패널이나 재정패널 등의 자료를 이용,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고 근로장려세제가 가져오는 변화를 한계세율 변화에 따른 실질임금률의 변화로 파악해 소득탄력성과 임금탄력성에 따라 노동공급 효과를 살펴 본 일련의 연구(강병구 (2007), 조선주(2009),김영숙(2011)) 등은 현재의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해 갖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여성의 노동 참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나 노동시간 증대 효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지급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기 이전 이전의 가용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시뮬레이션으로 노동공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역시도 시사하는 바가 유사하다. 기 시행된 것과 같은 형태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을 다소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노동시간은 평탄구간과 체감구간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최저소득계층의 노동시간의 증가폭이 소비의 증가폭보다 매우 작은것으로 나타나 EITC가 최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증진효과보다 생계비 보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영준(2008, 2010))

최근의 근로장려금 실 수급가구를 표본에 일부 포함하고 있는 복지패널 5차연도 자료³⁾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 하는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노동공급과 근로소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그 효과는 가구임금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세제 인식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가구 총근로일수가 15.874일 많은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에 그치는 정도이다. (박능후(2011)).

나. 정책연구

EITC제도의 시행 초기 이에 대한 국내 정책 연구는 선진국 운영 사례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도입방안을 제시한 연구들 (안중석(2005), 윤여필(2005),이상은(2007)) 과 국민기초생활제도 등 기타 주변 제도와의 조

3) 2012.4 기준으로 복지패널 5차웨이브는 공개 이전이며, 패널조사 관련 연구자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자료 이용에 제약이 존재하였다. 복지패널 5차웨이브는 2012.5.1.일자로 공개되었다.

화로운 발전을 위한 선결요건 등을 제시한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다(전병목(2007)). 특히 근로장려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타 제도와의 상관관계 및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장려세제와 대상 집단이 유사한 최저임금 제도의 소득분배효과 추정 결과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가구근로소득 기준으로 측정 한 지니계수를 0.00068만큼 감소시키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지니계수를 0.00535만큼 감소시켜 최저임금제도에 비해 분배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구, 성효용 (2009)). 또한 EITC 제도 강화에 따라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로 평가한 사회후생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2008년 EITC 도입으로 사회후생은 약 0.3%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EITC와 최저임금제 및 임금보조금제도의 효과를 일반균형모형하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EITC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나, 소득보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제 역시 청년층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남재량 외, 2011)

한편 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이후에는 개선방향에 대한 다각적 모색이 이어졌다. 이들 연구에서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세무행정상의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입법조사처, 2011 참조)

구체적으로 현재의 근로장려세제는 점증률이 점감률보다 낮게 설정됨에 따라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저해되고 점감구간 소득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것이 면세점 이하로 설정됨에 따라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점증률을 높이고 최고 급여수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1. 자녀수별로 급여체계를 차등화 할 것과 2. 구간별 소득상한 및 최대급여액 등 급여체계를 물가상승 추세와 관련 변수들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할 것, 3. 기초생보, 소득세제 등 관련 제도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유한욱 (201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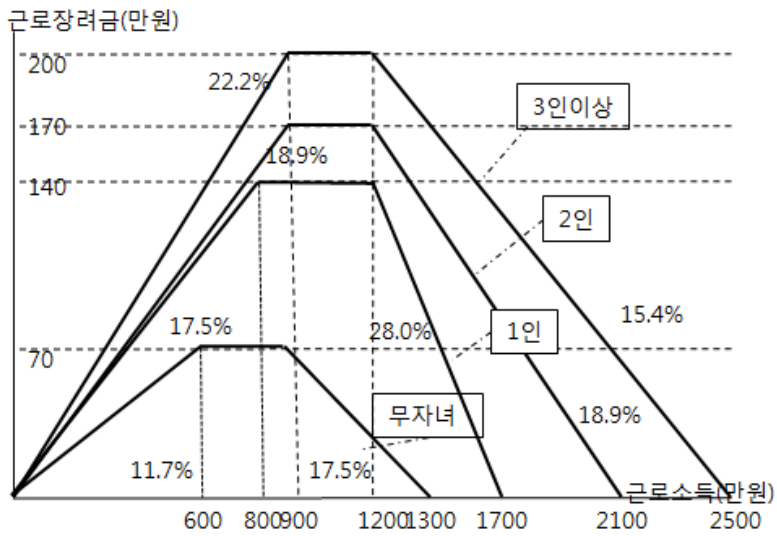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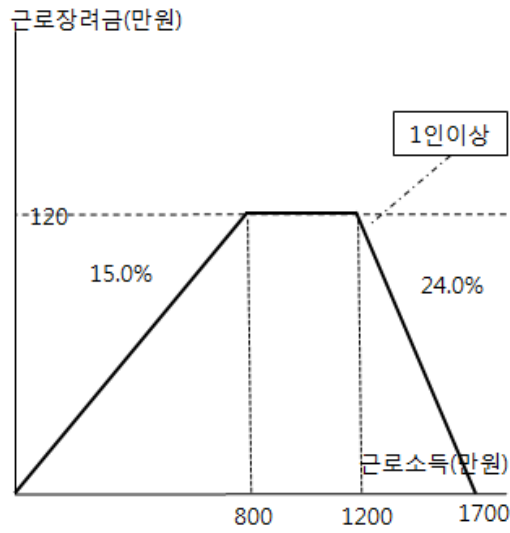
미시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소득지원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가 이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적용대상 및 급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한계점을 검토하여 수급자격요건 소득기준, 주택 및 자산기준, 자녀기준등의 구조적 개편방안과 점증구간과 점증률, 점감구간과 점증률

및 최고수급액의 미시적 개편방안에 대해서 30여가지 안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행한 결과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개편방안을 도출하고 각 모형별 정책 모의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적 개편방안에 대해 유용한 논의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최현수, 이서현(2010)) 특히 분석 대상 개편안 중 근로장려세제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확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도 전면 적용하고, 재산기준을 3억원으로 크게 완화시킨 안에 대해서 총 5백만 가구에 3.8조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통과된 개편안과 유사하다.

2. 문제의 제기

앞서 살펴본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반영하여 2011년 말 확정된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안은 자녀수별 급여체계를 차등화하고 최고급여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수급대상을 확대하였다. 크게 변화가 있었던 자녀 요건의 변화 효과를 자녀수 그룹별로 살펴보면, 먼저 무자녀 가구는 종전 제도 하에서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이번 확대시행으로 인해 가구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부양자녀가 1명인 가구는 최대지급금액이 기존보다 20만원 상향조정된 140만원이 되었으며, 부양자녀가 2명인 가구와 3명인 가수도 최대지급금액이 상향조정 (종전 120만원→각각 170만원, 200만원) 되며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소득도 상향조정 (종전 1700만원→각각 2,100만원, 2,500만원) 되었다. 한편 이전에는 시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주택가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림 1] 2012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계획 (1)



[표 5] 2012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계획 (2)

구분	2011 이전		2012년 제도 확대	
	소득기준	최대지급금액	소득기준	최대지급금액
무자녀 가구	-		1,300만원	70만원
1자녀 가구	1,700만원	120만원	1,700만원	140만원
2자녀 가구			2,100만원	170만원
3자녀이상가구			2,500만원	200만원
주택요건	5,000만원		6,000만원	
수급대상	근로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업자 포함 근로자	

그러나 이 안은 앞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온 개선점을 부분적으로만 반영, 자녀수별 차등화와 수급 기준액 상향조정에는 성공하였으나 ①점증률에 비해 점감률이 여전히 높고 ② 최대지급금액의 경우에도 무자녀 가구인 경우 연간 70만원(월 약 6만원) 정도에 그쳐 급여수준의 현실화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계획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신규 집단과 기존 수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V. 2012년 확대계획의 재정소요액과 분배효과

1. 기존제도 하의 2012년 재정소요 추산

통계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가계동향조사는 측정 대상 가구가 월별 가계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되는 국내 최대의 미시자료를 생성한다. 특히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원천별로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근로장려세제 변동시의 각종 효과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가계동향조사 2010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11년의 가구별 소득에 의거하여 산정되므로, 2011년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가 있다면 가장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것이나 본고는 동 자료 발표 이전에 작성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정에 따라 2011년의 가계소득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우선 2010년 조사된 가구의 인적구성 및 연령변화는 없다고 가정하고, 오로지 소득의 명목수준만 변화시킨다. 2010년 가구의 소득분포로부터 가구의 명목소득이 2011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공개된 2011년 도시가계동향 조사 자료 중 10분위자료에 나타난 가구소득 증감율을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에 분위별로 적용하여 가구소득을 생성했다. 여기에 2011년까지 적용된 시행 초기의 제도를 적용하여 기존 제도하의 소요재정을 추산하였다.

[표 6] 2011년 가계동향조사 월소득 10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

(단위: %)

월소득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증가율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1 분위	소득	3.16	5.37	4.01
	경상소득	3.34	5.68	4.03
	근로소득	1.05	10.37	-6.40
	사업소득	-5.53	-39.47	-11.60
	재산소득	27.11	-26.44	-31.70
	이전소득	8.08	-4.30	11.06
	비경상소득	1.17	-0.59	3.82
2 분위	소득	6.46	6.43	2.31
	경상소득	6.95	5.95	2.55
	근로소득	7.13	6.03	-14.72
	사업소득	6.68	-1.71	1.20
	재산소득	19.29	89.84	35.68
	이전소득	6.52	6.84	9.14
	비경상소득	-3.20	22.88	-0.42
3 분위	소득	6.38	6.24	4.59
	경상소득	6.91	6.45	5.82
	근로소득	10.13	4.36	-15.89
	사업소득	1.76	8.91	11.75
	재산소득	-13.70	-0.41	58.33
	이전소득	4.53	27.70	9.64
	비경상소득	-7.69	-1.58	-15.81
4 분위	소득	6.18	5.66	5.05
	경상소득	6.60	6.26	6.42
	근로소득	8.24	3.80	22.44
	사업소득	-2.37	14.56	2.83
	재산소득	-19.07	94.32	-41.43
	이전소득	19.38	33.73	4.80
	비경상소득	-8.33	-11.88	-20.34

단,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식별을 위한 전체 변수가 조사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여 식별하였다.

[표 7]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식별

요건	상세요건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처리
총소득	지난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과 가구의 주택임대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의 합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가구 내 최저연령가구원이 18세 이상이면 제외
주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무주택가구 (주택 기준시가 조사항목이 존재치 않음)
재산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1천만원 이하 혹은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
기초생보 수급자 제외	공적부조를 3개월간 받지 않은 사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 경상소득이 2010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제외

이를 토대로 가계동향조사 내에서 추출된 2012년의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수는 122가구이며 가중치를 고려시 16만 4천여 가구가 된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변수만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무주택가구에만 한정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을 추산한 것이 아니므로 총계 규모의 자료로 변환하여야 한다.

[표 8] 2010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2012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수

	가구수	가중치고려
점 증	29	33,062
평 탄	35	48,867
점 감	58	82,477
합 계	122	164,405

이를 위해 먼저 종전 세법의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이 유지되었던 2008~2010년에 대한 국세통계연보상 실제 지급자료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가구를 추출하고 이들에게 지급할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결과를 서로 비교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총계 자료로 변환하였다. 구체적으로 급여구간별로 지급실적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적용하였으며, 지급실적에 나타난 유주택 가구와 무주택가구의 비율을 통해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무주택 가구만 수급대상으로 식별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하였다. (보다 상세한 계산 과정은 부록 참조).

확대 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12년의 소요재정은 49만 4714가구에 전년에 비해 약 550억원 감소한 총 3,4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제도 유지시 소요재정 규모

구분	지급 대상 가구수	지급 소요액(억원)
규모	494,714	3,445

2. 신규 제도 하의 2012년 소요재정 추산

2012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은 자녀수별 급여체계를 차등화하고 최고급여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수급대상을 확대하였다.

위 “확대 이전의 소요재정액 추계” 와 마찬가지로 우선 1)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2011년 소득 가상적으로 생성 2) 2011년 소득에 2012년 제도를 적용하였을 때의 수급 대상 가구와 지급대상액 산출 의 단계를 걸쳐 확대시행 이후의 재정소요액을 추계하였다.

이를 기존 제도 하에서도 수급 대상이었던 가구와 신규 수급 대상 가구로 나누어 보면, 우선 기존 제도 하에서 수급대상이었던 가구는 122개 가구로, 가중치를 고려시 16만 4천여 가구이고 추가로 수급대상이 되는 가구는 샘플 내 315개 가구로 식별된다. 이는 가중치를 고려하면 45만 가구에 해당한다.

[표 10] 확대된 지급계획 하에서의 대상가구(가계동향조사 샘플 내)

부양자녀수	기 준	신 규	합 계
무자녀	0	274	274
	(0)	(398,632)	(398,632)
1	71	0	71
	(92,217)	(0)	(92,217)
2	45	25	70
	(61,340)	(27,302)	(88,641)
3+	6	16	22
	(10,849)	(24090)	(34,938)
합 계	122	315	437
	(164,405.3)	(450,023)	(614,428)

주: 1. 괄호 안 수치는 가중치

2.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자료가 포함하는 변수의 한계 상 근로장려 세제 시행의 효과 및 확대시행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표본단위를 전수자료로 확대하기 위해, 부록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국세통계연보 자료의 과거치와 비교하여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대상 직업군이 확대되는 효과를 고려하기 이전의 재정소요액을 추계해낸다.

[표 11] 제도 유지시 소요재정 규모(대상 직업군 확대이전)

구분	지급 대상 가구수	지급 소요액(억원)
규모	1,063,198	6,165

여기에 적용 대상 직업군이 확대되어 수급대상자가 증가함으로써 추가되는 재정소요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직업군 확대효과는 가계동향조사 표본 자료를 활용하기보다 총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총계자료인 국세통계연보 상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상, 새로이 적용대상이 되는 방문판매인과 보험설계업종의 지급건수와 연간지급금액 자료를 통해 확대적용의 효과를 추계하였다.

우선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이 업종별로 수록되어 있어, 이로부터 방문판매인과 보험설계업종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편입되

는 사람의 규모가 2010년 기준 38만여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1인당 지급금액은 연간 1백만원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각 업종이 해당 가구의 주 소득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역시 높은 비율로 수혜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2] 업종 확대에 의한 근로장려금 신규지급대상자의 소득분포(2010 기준)

	인원	연간소득지급금액 (백만원)	1인당지급금액
보험설계	76,425	104,175	136.3만원
방문판매인	315,370	483,380	156.3만원
합 계	391,795	587,555	150.0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다음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의 지급총액 규모별 분포(국세통계 4.4-5)로부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인원의 규모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간 지급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전체 인원의 85.1%로 나타난다. 보험설계인과 방문판매인 두 업종 종사자의 사업소득의 분포가 전체 사업소득과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면, 전체 39만 1,795명의 사업소득자 중 85.1%인 33만 3,424 가구가 소득조건에 부합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신규편입 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⁴⁾

4) 국세통계연보의 해당 통계표는 지급총액규모별 인원과 지급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급총액 규모에 따른 인원별 분포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를 추계하는 것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지급총액 구간이 1천만, 2천만, 4천만. 으로 나누어져 있어 확대시행된 제도 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상한 소득인 2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인원을 정확히 식별해내기 어렵다. 또한 이로써 자녀 수 별로 달리 정해지는 상한소득액의 차별성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신고자의 해당 소득이 가구내 주 소득자의 소득원이 아닐 확률이 높음에도 이와 같이 가정하고 신고자가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이를 수급자로 파악하게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과대추계 하게 될 수 있다.

[표 13] 확대된 지급계획 하에서의 재정소요액

	직종확대 미 고려	직종확대효과	합계
가구수	1,063,198	333,424	1,396,622
재정소요액 (가중치 고려), 억원	6,165	1,933	8,098
가구평균수급액	579,838원		

가구 평균 수급액은 약 58만원으로 제도 시행 이전(77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고 수급액이 60만원으로 낮은 무자녀 가구가 제도 시행과 함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대폭 편입되어 전체 평균 수급액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수급대상 가구의 약 20%)

한편 201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규모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1년 9월 세입예산안 편성 당시 2,289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예상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결된 적용직종 확대 및 최대지급금액 추가 인상 효과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는 추가적으로 2,6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를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세입예산안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8,9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며, 이는 본고의 8,100억과는 약 800억원 가량의 차이가 있다.

3. 2012년 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분배 개선효과

가. 전체집단

근로장려제도의 확대시행은 노동공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며, 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보전효과가 크다(전영준,2010) 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장려제도의 확대시행 효과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위에서 추계한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확대 이전 (2011 제도하) 지급액과 확대 이후 (2012 제도하)의 지급액에 각각 경상소득을 합한 소득변수를 대상으로 불평등도 완화 정도를 지니계수를 가지고 비교하고자 한다.

전체 집단 (수급자+비수급자 집단)에서 제도 확대시행 이전 산식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의 지니계수는 0.3709, 확대시행 이후 산식으로 지급했을 때 지니계수는 0.3706으로 본 제도의 확대시행은 전체집단에서 0.0003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가진다. 이는 0.07%의 변화에 해당한다.

[표 14]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의 분배 개선효과1 (전체집단)

	확대이전(a)	확대이후(b)	효과(b-a)
지니계수	0.3709	0.3706	0.0003
수혜가구수	494,715	1,063,198 (1,396,622)	568,483 (901,907)
예산소요액	344,518	616,482 (809,814)	271,964 (465,29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적용직종 확대 효과를 고려한 경우의 수혜가구수 및 예산소요액이나, 지니계수는 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되었음

확대이후 시행계획에서의 추가 재정소요액이 2,719억원인데, 확대이전 시행계획에서의 예산소요액이 3,445억원이고, 이는 0.04%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아래 표 참조)을 감안시 금번 확대시행 계획은 보다 적은 재정소요로 큰 분배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니계수를 0.01%p 감소시키기 위한 예산소요액이 도입효과로 보아서는 861억원인데 비해 확대효과하에서는 389억원으로 나타나, 확대시행이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의 분배 개선효과2 (전체집단)

	2012 확대시행 효과	이전 형태 근로장려금 지급 효과
지니계수 (개선율)	0.0003 (0.07%)	0.0001 (0.04%)
추가 재정소요액 (단위:백만원)	271,964	344,518
지니계수0.01%p당 (단위:백만원)	38,852	86,130

나. 집단별 분석

다음으로는 제도시행의 분배 개선 효과를 제도 설계의 주요 파라미터가 되는 부양 자녀수별, 총급여 집단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확대시행정책의 효과가 주로 어떤 집단에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제도 하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나 이번 확대시행으로 급여수준이 상승한 기존수급자집단과, 제도 확대로 새로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신규수급자 집단 중 본 제도 시행으로 분배효과가 보다 더 개선되는 집단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기존수급자집단의 지니계수는 전체적으로 확대효과에 따라 0.51% 하락하여 0.2651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경상소득만을 고려한 지니계수(0.2734)에 비해 기존 제도하의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져오는 개선효과 (0.0069, 2.53%)보다 확연히 낮다(아래 표 참조). 기존수급자 집단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확대시행 계획 하에서 근로장려금을 자녀수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하게 됨으로써 기존 수급가구의 수급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에 해당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6] 수급자 집단별 지니계수 개선효과

	시행이전	확대 이전	확대이후	시행효과	확대효과
기존제도하 수급자	0.2734	0.2665	-	0.0069 (2.53%)	-
확대후 수급자	0.3012	0.2999	0.2957	0.0012 (0.40%)	0.0042 (1.40%)
기존 수급자	0.2734	0.2665	0.2651	0.0069 (2.53%)	0.0014 (0.51%)
신규 수급자	0.3095	0.3095	0.3044	0.0000	0.0051 (1.64%)

주: () 안은 증감율

(1) 비수급자 포함 모집단에서의 효과

비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집단을 부양자녀수별로 나누어 근로장려금 합산 전 경상소득의 분배상태(도입이전)와 기존 제도 하의 근로장려금 합산 후 경상소득(확대이전)

및 확대된 제도 하의 근로장려금 합산 후 경상소득(확대이후)의 분배상태를 비교하였다.

[표 17] 부양자녀수별 근로장려금 확대지급의 불평등도(지니계수) 개선효과

	0자녀	1자녀이상	1자녀	2자녀	3자녀이상
도입이전	0.4270	0.2862	0.3091	0.2712	0.2597
확대이전	0.4270	0.2858	0.3087	0.2710	0.2596
확대이후	0.4267	0.2856	0.3085	0.2708	0.2590
도입효과	-	0.0003	0.0005	0.0002	0.0002
(개선율)	-	0.1%	0.2%	0.1%	0.1%
확대효과	0.0003	0.0002	0.0001	0.0002	0.0006
(개선율)	0.1%	0.1%	0.0%	0.1%	0.2%

분배상태가 가장 불평등한 무자녀 가구에서 금번 확대시행은 0.0003의 개선 효과를 가져 오는데, 이는 기존 형태의 근로장려금이 1자녀 이상 가구에 가져오는 분배 개선과 유사한 정도의 효과로 나타난다. 한편 확대시행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은 3자녀 이상 가구이다. 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지급 급여도 최대 200만원까지로 기존 120만원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기존수급자 집단

다음으로 기존수급자 집단의 불평등도는 확대시행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모든 기존 수급 가구에 대해 최대지급금액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수혜되는 근로장려금이 늘어나고 따라서 제도 확대 시행 후 분배상태가 개선된다. 하지만 확대시행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는 소득 요건과 급여 수준이 대폭 상향되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3자녀 이상 가구에서도 기존 제도 하의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져온 분배 개선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8] 부양자녀수별 근로장려금 확대지급의 불평등도(지니계수) 개선효과
(기존수급자집단)

	1자녀	2자녀	3자녀	전체
도입이전	0.2746	0.2733	0.1320	0.2734
확대이전	0.2676	0.2668	0.1249	0.2665
확대이후	0.2662	0.2643	0.1224	0.2651
도입효과	0.0070	0.0066	0.0071	0.0069
(개선율)	2.6%	2.4%	5.4%	2.5%
확대효과	0.0013	0.0024	0.0025	0.0014
(개선율)	0.5%	0.9%	2.0%	0.5%

(3) 확대시행계획하 신규수급자 집단

금번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의 혜택을 받아 새로 수급자집단에 포함되는 가구는 ①연간총소득 13백만원 미만 무자녀 가구, ②연간총소득 1700만원이상 2,100만원 미만 2자녀 가구, ③연간총소득 1,7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우선 각 자녀수 별로 나누어본 결과 무자녀 가구에서 확대시행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가 0.005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2자녀 집단과 3자녀 집단에서 새로 수급자집단에 편입되는 가구의 경우 수급 이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그 수도 상대적으로 적어 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무자녀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

[표 19] 부양자녀수별 근로장려금 확대지급의 불평등도(지니계수) 개선효과
(신규수급자집단)

	0자녀	2자녀	3자녀
확대시행이전	0.3204	0.2290	0.1096
확대시행이후	0.3150	0.2258	0.1060
개선분	0.0054	0.0032	0.0035
개선효과	1.7%	1.4%	3.2%

V. 결 론

근로장려세제는 노동공급 유인 제공과 저소득 층 실질소득 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부의 소득세제로서, 급여 규모와 노동공급 유인 구조등을 주의깊게 설계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급 3년차에 접어드는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자녀수별 차등지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급여 규모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2012년 근로장려세제 확대방안이 미칠 불평등도 완화 효과의 양상을 2010년 가계동향조사상의 가구 전체 및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불평등도 완화 효과는 2011년까지의 제도에 의한 근로장려금의 지급 효과보다 2012년 시행 범위와 급여액을 추가로 확대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확대시행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집단에서는 수급금액이 높은 3자녀 이상 가구가 새롭게 대상집단에 편입된 무자녀 가구 집단보다 더 큰 불평등도 완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수급가구와 신규 수급가구를 비교한 결과로는 기존 수급 가구에서 보다 큰 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나타나며, 신규수급가구 중에서도 주로 기존 분배상태가 불평등한 무자녀 가구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이러한 분석결과는 저소득층에서 많은 표본이 추출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상의 한계를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의 궁극적인 불평등도 완화 효과는 가처분소득의 인상보다도 장기적으로 미취업자의 취업 동기 유발 및 근로제공시간 증가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 상에서는 이를 감안한 불평등도 완화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확대시행 방안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기회를 앞두고 있다. 본 보고서가 분석하였던 바와 같이, 차후의 제도 개편 시에도 금번 확대시행의 예상 효과에서 보이는 것 처럼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가 분배개선 효과에 있어 비용 효율적이고, 수혜집단간 분배 측면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우선 종전 세법상의 기준에 의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던 2008~2010년 귀속 소득 분에 대해 국세통계연보상 실제 지급자료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가구를 추출하고 이들에게 지급할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결과를 서로 비교 하였다.

[표 20] 총소득 규모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교

(단위: 가구)

총소득 규모별	2008		2009		2010	
	가계동향 조사	지급실적	가계동향 조사	지급실적	가계동향 조사	지급실적
1백만원 미만	6,148	38,899	5,039	20,689	8,340	19,231
2백만원 미만	4,194	38,387	13,549	25,572	3,999	23,382
3백만원 미만	3,819	37,183	3,032	28,404	11,432	25,786
4백만원 미만	13,365	35,819	6,141	29,571	2,522	27,169
5백만원 미만	5,869	36,256	9,832	30,531	3,221	27,895
8백만원 미만	22,731	102,124	43,775	98,345	19,401	87,854
10백만원 미만	26,573	78,372	21,445	73,903	23,925	67,046
12백만원 미만	40,922	73,930	57,066	79,704	34,686	73,637
15백만원 미만	64,803	100,939	91,107	114,565	62,464	108,805
17백만원 미만	38,531	48,811	45,402	64,796	53,909	61,293
합 계	226,955	590,720	296,387	566,080	223,899	522,098

주:가계동향조사의 가구수는 가구별 가중치의 합

[표 21] 총소득 규모별 가구당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비교

(단위: 원)

총소득 규모별	2008		2009		2010	
	가계동향 조사	지급실적	가계동향 조사	지급실적	가계동향 조사	지급실적
1백만원 미만	59,792	81,306	33,561	76,127	87,513	76,231
2백만원 미만	95,554	206,343	140,846	203,817	222,844	204,730
3백만원 미만	164,154	333,098	371,229	331,538	352,859	331,459
4백만원 미만	330,511	460,871	440,720	459,369	476,533	458,169
5백만원 미만	417,321	596,662	475,700	592,676	580,485	589,425
8백만원 미만	817,794	865,606	804,312	859,912	989,654	855,021
10백만원 미만	860,053	1,109,269	927,183	1,101,065	878,179	1,098,052
12백만원 미만	1,163,635	1,144,334	983,333	1,141,147	1,019,085	1,140,636
15백만원 미만	525,523	919,523	442,883	920,674	546,135	920,482
17백만원 미만	746,154	418,501	786,403	411,275	728,170	414,892

우선 가구 수를 보면, 가계동향조사상 가구수와 지급실적 가구는 총합으로 보아 약 2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며 그 배수는 연도별로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계동향조사상에서 유주택 가구를 고려하지 못한 점, 실제와 달리 연령기준으로만 부양자녀를 식별한 점,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에서 지급이전에 선 공제되는 체납세액을 고려하지 못한 점 및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추출 편의 등에 종합적으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실적에 나타난 무주택가구의 비율로 가계동향조사 상 결과의 수급 대상 가구수를 나누어 줌으로써 가계동향자료가 유주택 가구를 수급대상으로 식별 할 수 없었던 한계를 일차적으로 보완하였다.

[표 22] 지급실적자료상 무주택가구 비율(3년평균)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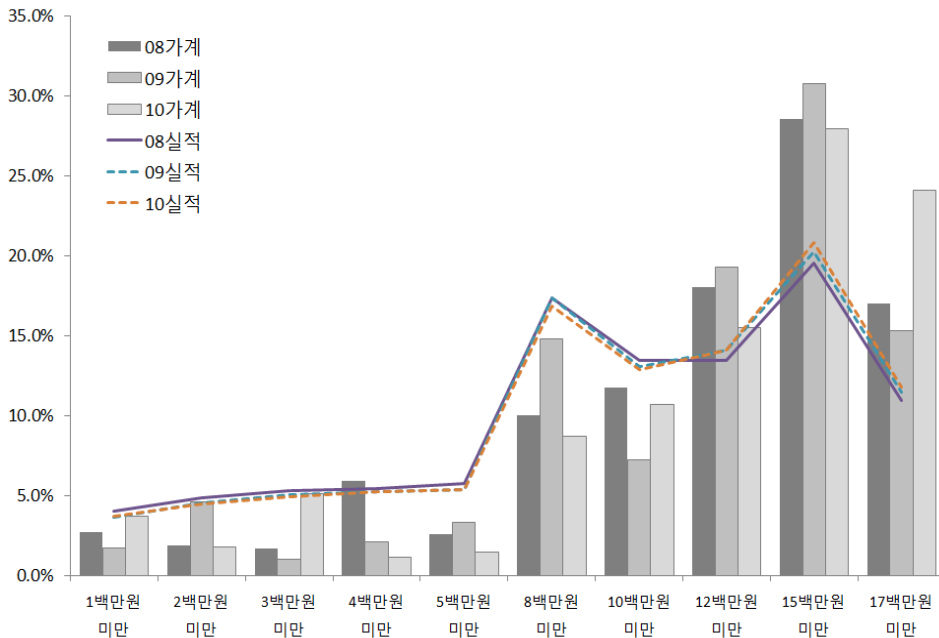
	2008	2009	2010	3년평균
무주택가구	469,046	451,620	424,009	448,225
유주택가구	121,674	114,460	98,089	111,408
합 계	590,720	566,080	522,098	559,633
무주택가구비율	79.4%	79.8%	81.2%	80.1%

이후 위 [표 21]로부터 구한 각 구간별 배수의 3년 평균을 가계동향조사상 결과에 곱하여주는 방식으로 가계동향조사상 결과를 총계 자료의 추정치로 변환하였다.

[표 23] 총소득 규모별 가구당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의 배수(지급실적/가계동향)

총소득 규모별	2008	2009	2010	평균	표준편차
1백만원 미만	3.1	3.3	1.8	2.7	0.78
2백만원 미만	5.5	1.5	4.7	3.9	2.10
3백만원 미만	6.6	7.5	1.8	5.3	3.05
4백만원 미만	1.9	3.9	8.6	4.8	3.45
5백만원 미만	4.6	2.5	6.9	4.7	2.23
8백만원 미만	3.6	1.8	3.6	3.0	1.05
10백만원 미만	2.4	2.8	2.2	2.5	0.27
12백만원 미만	1.6	1.1	1.7	1.5	0.30
15백만원 미만	1.4	1.0	1.4	1.3	0.23
17백만원 미만	1.3	1.1	0.9	1.1	0.22
합 계	2.1	1.5	1.9	1.8	0.28

[그림 2]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수 총소득 구간별 비중의 비교



한편 가계동향조사로 추출한 수급대상 가구의 총소득 구간별 분포와, 실적자료의 수급 가구의 총소득 구간별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양 자료가 나타내는 소득분포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 실선은 실적자료의 가구 비중 분포를, 막대그래프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구간별 분포를 나타낸다. 즉, 수급자 집단 중 각 구간의 가구수가 전체 수급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실선그래프는 해마다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막대그래프는 연마다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 가계동향조사로 추출한 정보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나타낸다.

한편 막대그래프가 특징적으로 1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실선보다 높이 올라가고 있어,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수급대상 가구가 1천만원을 기점으로 1천만원 이상 부분에 쏠려 나타남(over-represented)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되고, 총급여 1천만원 초과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효과는 과대평가 되기 쉽다.

따라서 막대그래프로 나타난 부분을 실선그래프에 근사하도록 조정해 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총계자료에 가까운 수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2012년 변경 제도

하에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수는 실선과 막대그래프간 비율 (3년평균)을 나타내는 각 총소득 구간별 아래 수치를, 유주택가구를 고려한 가계동향조사상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에 곱하여 추산하였다.

[표 24] 총소득 규모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분포의 배수(지급실적/가계동향)

총소득 규모별	2008	2009	2010	평균	표준편차
1백만원 미만	1.5	2.1	1.0	1.5	0.58
2백만원 미만	2.6	1.0	2.5	2.0	0.91
3백만원 미만	3.1	4.9	1.0	3.0	1.97
4백만원 미만	0.9	2.5	4.6	2.7	1.85
5백만원 미만	2.2	1.6	3.7	2.5	1.08
8백만원 미만	1.7	1.2	1.9	1.6	0.40
10백만원 미만	1.1	1.8	1.2	1.4	0.37
12백만원 미만	0.7	0.7	0.9	0.8	0.10
15백만원 미만	0.7	0.7	0.7	0.7	0.05
17백만원 미만	0.6	0.7	0.5	0.6	0.13

다음으로 구간별 가구당 지급예상금액 역시 [표 9]를 통해 얻어지는 총소득 구간별 배수를 곱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총계 규모의 자료로 변환하였다.

[표 25] 총소득 규모별 가구당 지급예상금액의 배수(지급실적/가계동향)

총소득 규모별	2008	2009	2010	평균	표준편차
1백만원 미만	1.4	2.3	0.9	1.5	0.71
2백만원 미만	2.2	1.4	0.9	1.5	0.62
3백만원 미만	2.0	0.9	0.9	1.3	0.64
4백만원 미만	1.4	1.0	1.0	1.1	0.23
5백만원 미만	1.4	1.2	1.0	1.2	0.21
8백만원 미만	1.1	1.1	0.9	1.0	0.12
10백만원 미만	1.3	1.2	1.3	1.2	0.05
12백만원 미만	1.0	1.2	1.1	1.1	0.09
15백만원 미만	1.7	2.1	1.7	1.8	0.21
17백만원 미만	0.6	0.5	0.6	0.6	0.02
평 균	1.1	1.2	1.1	1.1	0.04

그리고 이전 지급실적이 없는 총소득 규모 17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가구수별, 가구당 지급금액 별로 전체 평균치를 곱하여 변환하였다.

참고문헌

- 강병구(2007),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4호, pp.87-109.
- 강병구·성효용(2009),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 분배효과 비교」, 재정정책논집 제11권 제3호, pp.215-235.
- 국회입법조사처(2011), 「근로장려세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 김영숙·조선주·정가원·권순현(2011),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재량·이철인·전영준·우석진(2011),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능후(2011),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2호, pp.165-191.
- 유한욱(2009), 「근로장려세제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11),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이상은(2007),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3호, pp.25-55.
- 재정경제부 EITC 추진기획단(2007), 「근로장려세제」, 재정경제부 정책백서.
- 전병목(2007),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이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12권 제11호, pp.51-68.
- 전영준(2008),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재정학연구 제1권 제4호, pp.1-43.
- _____ (2010),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정기현(2009),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조세연구 제9-1집, pp.92-133.
- 조선주(2009),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9권 제3호, pp.29-54.
- 조선주·김영숙(2011),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3회 재정패널학술대회자료집, pp.143-162.
- 최현수·이서현(2010),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덕순 · 노대명 · 김재진(2010),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issa, Nada and Hilary Williamson Hoyn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NBER Working Paper , No. 6856, 1998.

Eissa, Nada and Jeffrey B. Liebman,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1, No. 2, 1996, 605-637

Hansen, G. and Ayse Imrohorglu, "The Role of Unemployment Insurance in an Economy with Liquidity Constraints and Moral Hazar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0, No. 1, 1992, 118-142.

Hoffman, Saul D. and Laurence S. Seidma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tipoverty Effectiveness and Labor Market Effect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0

Holt,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t age 30: What we know, the Brookings Institution Research Brief, Feb 2006.

Hotz, V. Joseph, and John Karl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NBER working paper, No. 8078, 2001.

Keane, Michael P., "A New Idea for Welfare Reform,"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Vol. 19, No. 2, 1995, 2-28

Keane, Michael and Robert Moffitt, "A Structural Model of Multiple Welfare Program Participation and Labor Suppl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39, No.3, 1998, 553-589.

Meyer, Bruce D. and Dan T. Rosenbaum, "Welfar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Single Mothers," NBER Working Paper, No. 7363.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Financial Audit: IRS' Fiscal Year 1999 Financial Statements," GAO/AIMD-00-76, Washington, D.C., 2000

국세청 (<http://www.nts.go.kr>)

[경제현안분석 목록]

	제 목	집 필	발 간
72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조은영	2012. 6
7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신영임·장윤정	2012. 6
70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최천규	2012. 5
69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성명기	2011. 12
68	경제성장률 단기예측 모형 - 베이지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	황종률	2011. 12
67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윤용중, 이강구, 윤준승, 서재만, 김정미	2011. 11
66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2011. 11
65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서재만	2011. 9
64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신동진	2011. 8
63	2010년 결산상 재정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준승	2011. 8
62	재정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 -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	박승준, 이강구	2011. 6
61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원동아	2011. 2
60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2010. 12
59	위안화 절상의 영향과 시사점	신후식, 유승선	2010. 12
58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서재만	2010. 12
57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이영환, 신영임	2010. 10
56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윤준승, 정지은, 이남수	2010. 9
55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신동진	2010. 7
54	경기선행지수의 향후 경기에 관한 시사점	유승선	2010. 7
53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김정미	2010. 7
52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혜정	2010. 6
51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신영임, 이영환	2010. 5
50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연훈수	2010. 2

	제 목	집 필	발 간
4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나아정, 박승준	2009. 12
48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장인성	2009. 12
47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황종률	2009. 12
46	사회복지 기능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심혜정	2009. 12
45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운용현황	정지은	2009. 11
44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정지은	2009. 11
4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이영환, 황진영,신영임	2009. 11
42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신동진	2009. 11
41	2008년 이후 세계개편의 세수효과	이영환,신영임	2009. 8
40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신동진	2009. 7
3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박승준	2009. 4
38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9. 3
37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8. 12
36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황진영	2008. 12
35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심혜정	2008. 12
34	2009년 세계개편안 분석 :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	이영환, 정지은	2008. 11
33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정지은	2008. 11
32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 R&D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훈	2008. 11
31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 종합부동산세	이영환, 신영임	2008. 11
30	OECD 주요국가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이남수, 이성규	2008. 9
29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정지은, 홍인기, 전승훈	2008. 9
2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정상훈, 이충연	2008. 8
27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훈수	2008. 4
26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영환, 이성규	2008. 1
25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동진	2007. 12

	제 목	집 필	발 간
24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 필요성 검토	황진영	2007. 12
23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2007. 11
22	한국의 실질 GDP 장기 예측 : 2007~2050년	장인성	2007. 11
21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황진영	2007. 9
20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정상훈	2007. 9
19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	문성환	2007. 8
18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신동진	2007. 8
17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황종률	2007. 7
16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 전승훈	2007. 7
15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정문중	2007. 6
14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 서세욱	2007. 6
13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전승훈	2007. 5
12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송원근	2006. 6
11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정문중	2006. 6
10	2000~2005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예측 방식의 개선방향	유승선	2006. 5
9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문성환	2006. 5
8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김기승	2006. 2
7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전승훈	2006. 1
6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현황 및 과제	송원근	2005. 12
5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문성환	2005. 7
4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정문중	2005. 6
3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기승	2005. 5
2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전승훈	2004. 12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기승, 임일섭, 전승훈	2004. 10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발간일 2012년 7월 12일
발행인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커뮤니케이션 인맥 (tel 02·2269·0932)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4744)
-

ISBN 978-89-6073-560-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2

